

협 조 전

수 신 교직원 상조회장 (참조: 상조회 고문 겸 총장)

발 신 장안대학교 교수평의회

제 목 「교직원 상조회 규정」 개정 건의

1. 관련: 2026. 9. 2.자 교수평의회 임원 협의 결과
2. 현행 「교직원 상조회 규정」 (1983. 11. 10. 제정, 2011. 3. 1. 최종 개정)은 제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다음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건의 사항
 - 제 4 조(회원의 자격): 외국인강의전담 교수를 회원 자격 대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제 11 조②(감사): 현행 "세무회계과 학과장"으로 고정된 감사 선출 방식을 운영위원회 지명(선출)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 21 조③: "상조사항 발생 후 15 일 경과 시 상조 제외" 조항은 삭제가 필요함
 - 별표 1(상조 대상의 범위와 상조액):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고, 향후 회칙 전체 개정 없이도 운영위원회 의결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 조항 신설이 필요함
 - 제 21 조①: 신고 서식으로 인용된 "별지 제 1 호" 서식의 실물 존재 여부 확인 및 첨부가 필요함
 - 제 11 조④: 감사의 회계 감사 및 보고 시기(예: 회계연도 종료 후 O 개월 이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4. 붙임 자료와 같이 현행 규정 검토 의견을 함께 송부하오니 개정안 마련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직원 상조회 규정 개선 검토안」 1 부. 끝.

2026. 9. 16.

장안대학교 교수평의회
회장 정 사 언 (직인생략)